

2019. 6. 18. 10:00

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연지 기세임도 조성

-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및 산림욕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문화·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 송해공원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現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및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작업장 확장 이전을 통해 근로기회 제공 등 일자리 창출
- 이전 후 기존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수요에 맞춰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확장 운영

○ 달성 화석 박물관 건립

-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로 소장 화석 가치, 우수한 입지여건, 우리 군 건립의지를 인정받았으며,
- 전국 최초 화석전문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연계한 전국 최고 학생교육투어의 장을 마련코자 함.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 최근 생활체육활동의 참여 수준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지역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지역적 균형발전을 고려한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마을 내 공동주차장의 부재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불편 초래
- 인근 한훤당 고택 방문객의 증가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필요
-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

4. 주요내용

○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85-2번지
- 기 간 : 2019. 1. ~ 2020. 4.
- 면 적 : 55,636m²
- 총사업비 : 500백만원 (토지매입비 250, 공사비 250)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 기 간 : 2019. 4. ~ 2019. 12.

- 대지면적 : 7,598.2m²
- 시설규모 : 지상1층 3동, 연면적 2,352m²
- 사 업 비 : 5,700백만원(토지·건물 매입비 3,900, 공사비 1,700, 물품취득비 100)
- 주요시설 : 공장, 작업장, 사무동(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

○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 위 치 :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총 부지 45,184.8m² 中 8,980m²정도 활용
- 기 간 : 2016. 12. ~ 2022. 1.
- 주요시설 : 박물관(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12m²), 야외전시장(2,000m²), 주차장(45면) 등
- 사 업 비 : 193.85억원(국비 74.81, 군비 119.04)
· 부대비 31억원(설계비 6.7, 감리비 13.8, 기타 10.5), 공사비 163억원

○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 위 치 :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총 부지 45,184.8m² 中 23,000m²정도 활용
- 기 간 : 2017. 9. ~ 2021. 12.
- 주요시설 : 스포츠센터(지상3층, 연면적 5,358m²), 야외시설(축구장, 조깅트랙, 주차장 등 19,375m²)
- 사 업 비 : 130억원(국비 30, 군비 100)
· 스포츠센터 : 109.6억원, 축구장 : 12.1억원, 조깅트랙 : 1억원, 야외주차장 : 7.3억원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 기 간 : 2019. 4. ~ 2019. 12.
- 면 적 : 2,062m²(주차면수 56면 정도)
- 사 업 비 : 650백만원(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붙임 :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12 (84)	159,480.99	15,573,464	7 (4)	77,618.2	19 (88)	237,099.19	52,427,231
	토지	5 (83)	144,371	5,972,990	3 (4)	65,296.2	8 (87)	209,667.2	8,116,206
	건물	2	1,857.35	2,041,588	1	1,452	3	3,309.35	2,567,139
	2.교환								
3.기타	토지	1 (1)	1,488	193,886			1 (1)	1,488	193,886
	건물	4	11,764.64	7,365,000	3	10,870	7	22,634.64	41,550,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묘	잡	논공읍	금포리	1305-1	585	191,997,000	2019.2.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 308/1102 (잠원동, 신반포 8차 아파트)	오창익	2018. 12월 의회 의결
2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305-2	1,081	354,784,200					
3 (7타)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4	66	36,234,000	2019.1. ~ 12.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달성군	2018. 12월 의회 의결
	대	장	논공읍	금포리	산29-11	187	1,589,500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2,662	1,126,292,20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3	978	435,601,20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0	66	29,396,40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1	20	8,908,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3	411	172,209,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10	20	8,380,000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03	780	226,200,0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 (기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873	873	365,787,000	2019.1. ~ 12.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달성군	2018.12월 의회의결
	전	논공읍	금포리	1308	437	437	175,499,200					
	장	논공읍	금포리	1308-3	1,189	1,189	498,191,000					
	임	논공읍	금포리	산34	444	444	186,036,000					
	전	논공읍	금포리	1309	571	571	143,035,500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3	1	1	741,000					
	잡	논공읍	금포리	2394-22	34	34	14,246,000					
	묘	논공읍	금포리	1305-1	585	585	191,997,000					
	전	논공읍	금포리	1305-2	1,081	1,081	354,784,200					
	4	구	유가읍	용리	836	469	29					
5	구	유가읍	용리	842	1,924	78	1,404,000					
6	구	유가읍	용리	861	2,764	1,164	145,500,000					
7	구	유가읍	산185	21,593	9,660	847,375,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시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8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8	104	104	140,4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8.12월 의회결의
9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9	98	98	132,300			"		"	
10	답	답	유가읍	용리	1	367	367	3,926,900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 2길 37		유가사	
11	잡	잡	유가읍	용리	2	160	160	3,552,000			"		"	
12	답	답	유가읍	용리	2-1	861	861	9,212,700			"		"	
13	답	답	유가읍	용리	6	264	264	2,824,800			달성군 유가읍 못안길 102		박일용	
14	답	답	유가읍	용리	9	1,044	1,044	12,319,200			"		"	
15	답	답	유가읍	용리	10	152	152	1,626,400			"		"	
16	답	답	유가읍	용리	11	208	208	2,225,600			"		"	
17	답	답	유가읍	용리	12	407	407	4,354,900			"		"	
18	답	답	유가읍	용리	13	162	162	1,733,400			"		"	
19	답	답	유가읍	용리	14	304	304	3,252,800			"		"	
20	임	임	유가읍	용리	18-3	359	359	5,313,200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 익원공파 달성문회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21	답	답	유가읍	용리	29	2,430	352,350,0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117	성낙언	2018.12월 의회의결
22	답	답	유가읍	용리	29-2	1,139	165,155,000			경남 창원시 대정로 79 성원1차아파트 113-103		김재선	
23	답	답	유가읍	용리	29-3	1,456	211,120,000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 101동 1501호(매호동 한일유엔아이)		김상식	
24	답	답	유가읍	용리	30	2,089	178,609,500			달성군 유가읍 용리 55		윤태식	
25	답	답	유가읍	용리	31	2,618	223,839,000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7 대곡사계절타운 304-1403		조진섭	
26	답	답	유가읍	용리	31-1	989	121,548,100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 3-13		정재인	
27	답	답	유가읍	용리	32	1,917	30,672,00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28	답	답	유가읍	용리	33	264	4,303,2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김외학	
29	답	답	유가읍	용리	34	1,428	23,276,4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김외학	
30	답	답	유가읍	용리	35	3,074	38,396,800			대구 수성구 노변공원로 7길 11-6		청주정씨 감정공과 경산중증	
31	답	답	유가읍	용리	36	172	2,803,600			-		최우준	
32	답	답	유가읍	용리	37	2,407	27,177,900			대구 수성구 만촌로 20길 32		이영우외1명	
33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	1,791	1,934,280			달성군 현풍읍 중리길 33-9		김해김씨 달동공과 중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34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3	198	213,84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달성군 현풍읍 중리 133	김해김씨달 문공파종중	2018.12월 의회의결
35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1	192	207,360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1 건오힐타워 401호	김영일	
36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3	6,200	873,600			대구 달서구 상화로 380, 302동 611호 (상인동, 장미아파트)	박성영	
37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5	27,128	14,492,500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0	박소현외2명	
38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1	3,969	10,875,060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손삼출외2명	
39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6	136,860	16,306,158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성달용외1명	
40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2	86	92,88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1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3	340	421,60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2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4	7,384	8,565,44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정원외1명	
43	도	도	유가읍	용리	산17-5	173	605,50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정원	
44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4	1,753	2,068,540			대구 남구 명덕로26길 53-3	임은경외1명	
45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	17,022	1,207,612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9, 2107동 2001호	배중호	
46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4	13,759	8,355,120			대구 동구 동부로32길 99, 3동 408호 (신원동, 효신아파트)	배명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개소)	산출가액(원) (분묘보상액 × 개소)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용 리	유 가 읍	일단의 수 량 (개소)					주 소	성 명		
47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5	3,582	401,184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	강남산업 주식회사		2018.12월 의회의결
48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6	1,225	991,025			"	"		
49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9-1	12,396	9,686,200			대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익원 공파달성문화		
50 (표지)	답	답	유가읍	용리	32	3개소	10,513,35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1	1개소	3,504,450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손삼출외1명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6	1개소	1,107,79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	-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3	1개소	1,107,790			-	-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6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8	4개소	14,017,800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6, 화성파크드림 212동 1403호	김성곤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4	3개소	10,513,350			"	"		

※ 분묘보상액 산정기준 : 2018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8.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번	지 목		제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51 (건물)	종교	종교	유가읍	용리	산1-2	2,605	1,000,000,000	2019.6.	중각·범종		달성군	2018.12월 의회의결
52 (건물)	종교	종교	유가읍	용리	산1-3	810	400,000,000		일주문		달성군	
53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59	1,640	538,412,000	2019.1.~ 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2018.12월 의회의결
54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0	357	119,595,000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79	달성군 농회	
55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1	172	53,010,4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6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2	542	181,57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7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1	109	3,270,000			대구 북구 칠성동 404	곽치만	
58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3-2	202	18,402,2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3-3	8,797	409,060,5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60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4	235	7,050,000			경북 구미시 인동 46길 6 부영아파트 603-1201	곽대호	
61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5	783	23,020,20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 캐슬골드파크 1115-1202	유창식	
6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8	2,486	74,58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63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9	2,294	68,820,000	2019.1.~ 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2018.12월 의회의결
64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0	3,124	93,720,000			달성군 현풍읍 지리	곽성용	
65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1	638	16,715,6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6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2	813	23,170,5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67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3	1,797	62,895,0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8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3-1	8,634	23,940,000			-	국 (건설부)	
6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4	258	7,353,0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70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5	258	7,353,0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71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6	826	31,476,600			대구 남구 현충로 39길 84	하원호	
7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7	36	1,371,600			-	국 (건설부)	
73 (건물)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59	356.44	20,317,08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0	207.74	11,841,18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1	108.8	6,201,60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2	144.37	8,229,09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4	전	전	화원읍	명곡리	36	1,319	100,156,000	2019.7.	화원명곡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및 진입도로조성	대구 달서구 상인로 26안길 14	박재영	2018.12월 의회의결
75	전	전	화원읍	명곡리	37	369	53,874,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길 68	김강현	
76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3-1	689	100,594,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전병태	
77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3-2	1,724	251,704,000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4	박외갑 외 1	
78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4	855	124,830,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전병태	
79	임	임	화원읍	명곡리	산12-1	182,794	5,545,300			달성군 화원읍 명친로 21길 58-7	영동김씨대 구외중외 1	
80	대	대	하빈면	포리	635	1,488	193,886,400	2019.3.	육신사공영 주차장 조성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중무	2018.12월 의회의결
81	대	대	하빈면	포리	636	2,352	297,528,000			대구 동구 동부로 34길 64 나동 107호	박진우	
82	대	대	하빈면	포리	636-1	200	25,300,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중무	
83	답	답	화원읍	본리리	1296-2	59	2,938,200	2019.7.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곽경애	2018.12월 의회의결
84 (기타)	임	임	화원읍	본리리	1314	6,883	1,995,000,000 (건축비)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8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7,310,000	2018.10. ~2019.6.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33길 38	김길동	2018.12월 의회의결
86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14,34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574	김태욱	
8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10,504,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7,74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9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38,052,4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35,55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영식	
9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52,459,9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6,142,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35,0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한용	
9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69,153,00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5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39,923,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24,24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314	167,362,000	2018.10. ~2019.6.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2018.12월 의회의결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9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979	277,057,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9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165	72,4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100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1,471	630,323,5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1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602	87,29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463	196,312,000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운화	
103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74	374	46,376,000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운화	
10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107	57,833,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10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189.6	189.6	79,058,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56	1,264.1	1,264.1	238,593,25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8	김운동외3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330.2	330.2	69,32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2-3	김정자외1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572	572	110,82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12	김운화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06 (건물)	임	임	옥포읍	기세리	598, 599	414.6	1,500,000,000 (건축비)	2019	낙경청 선비 문화체험관 조성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 3월 의회 의결	
107 (건물)	대	대	현풍읍	상리	627	942	2,800,000,000 (건축비)	2019	달성문화원 증축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08	대지	대지	하빈면	묘리	635	1,488	193,886,400	2019	육신사 공영 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박종무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일단의 수 량 (㎡)									
1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85-2	55,636	68,988,640	2019.7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 201동 1902호 (남산동, 남산휴면시아2단지)	석병호	
2	장	장	구지면	예현리	757-12	7,598.2	1,892,711,620	2019.7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확장이전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7번길 34 시화공단 1나 309호	주식회사 영완	
3 (건물)	장	장	구지면	예현리	757-12	1,452	525,551,400				달성군	
4 (건물)	장	장	구지면	예현리	757-12	900	1,800,000,000 (건축비)	2019.12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신축
5 (건물)	체육	체육	유가읍	상리	971	4,612	19,385,000,000 (사업비)	2022.1	화석박물관 건립	"	"	"
6 (건물)	체육	체육	유가읍	상리	971	5,358	13,000,000,000 (사업비)	2021.12	테크노스포르츠 센터 건립	"	"	"
7	전	전	현풍읍	지리	1144	430	37,840,000	2019.8	마을단위 경영 주차장 조성	달성군 현풍읍 지동1길 43 (지리, 한훤당고택)	김백용	
8	임	임	현풍읍	지리	1145-1	1,632	143,676,000			"	"	

위 치 도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85-2번지



위 치 도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현 장 사 진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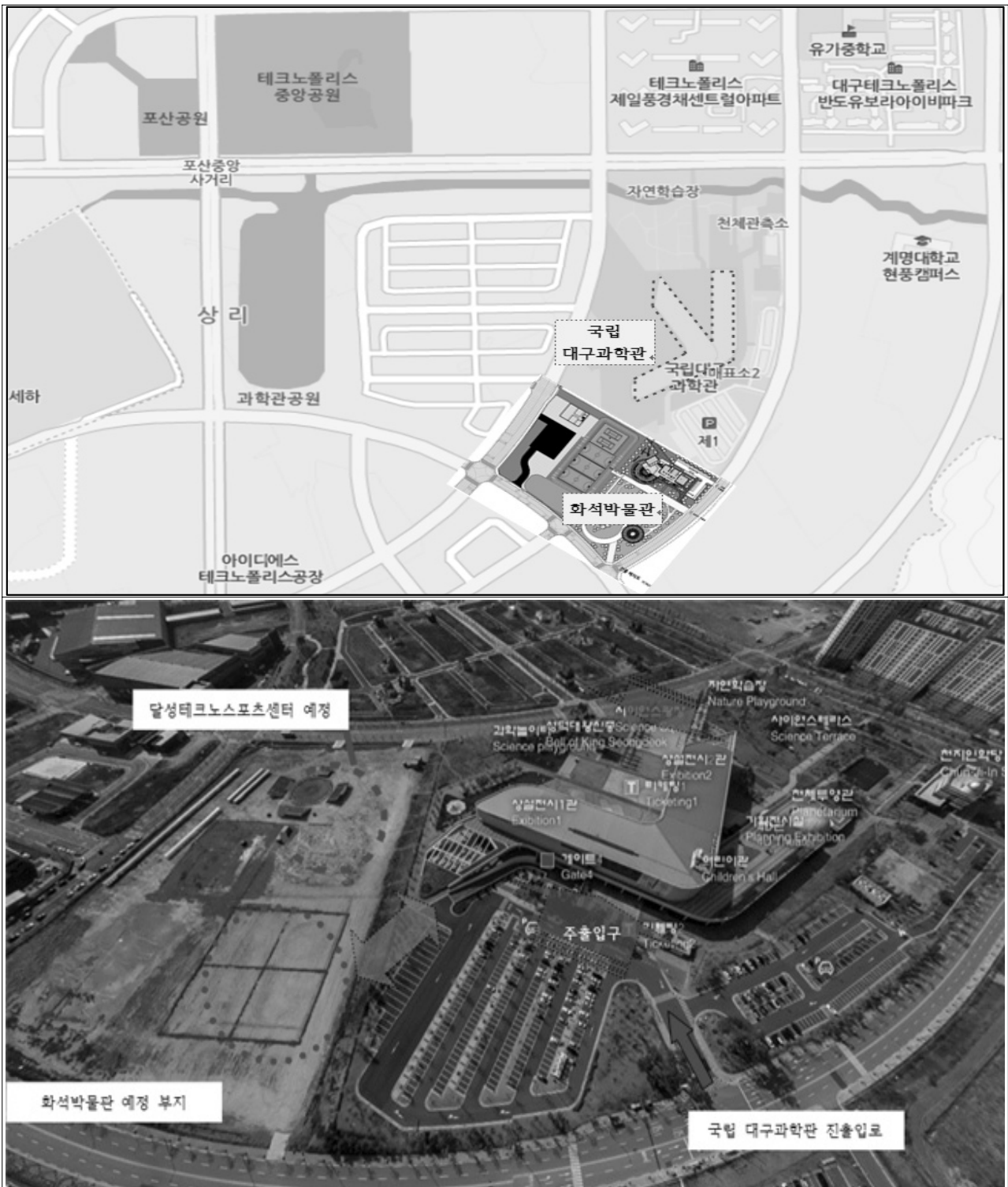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위 치 도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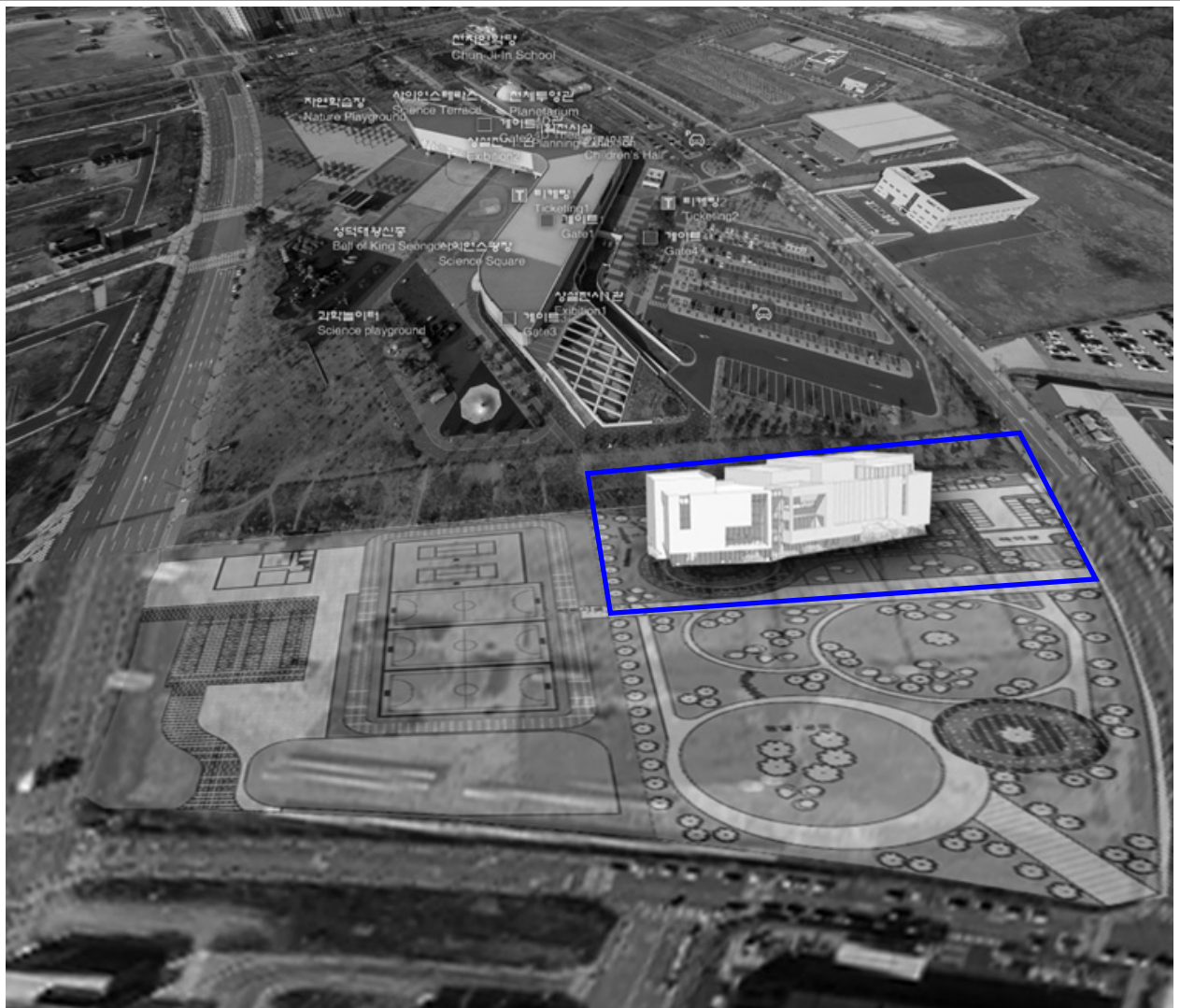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조 감 도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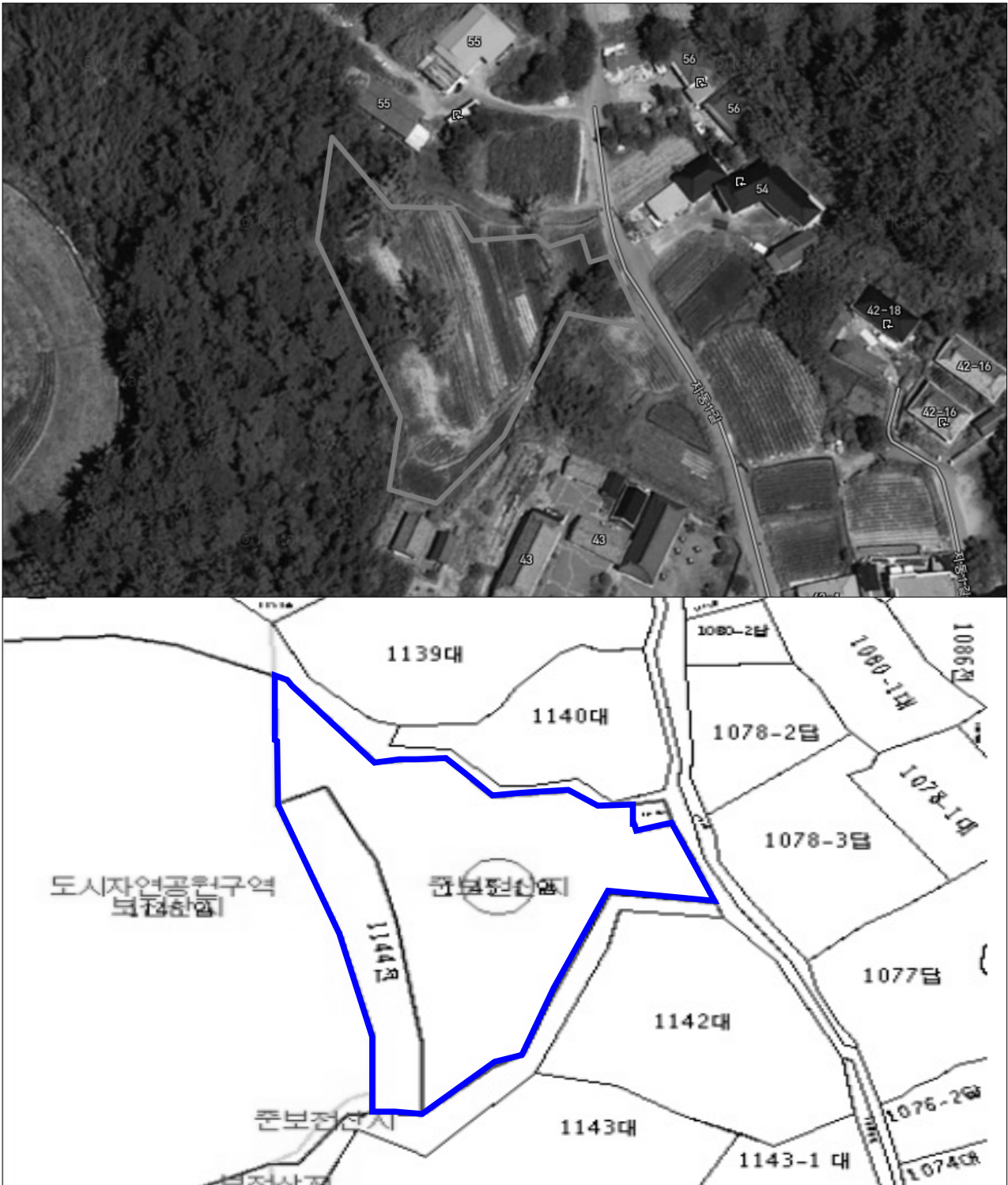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위 치 도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현 장 사 진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II. 검토의견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옥연지 기세임도 조성

-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및 산림욕장과 연결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문화 · 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 송해공원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송해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現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및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작업장 확장 이전을 통해 근로기회 확대 제공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 이전 후 기존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수요에 맞춰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장애인 복지 확대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 화석 박물관 건립

-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로 소장 화석 가치, 우수한 입지여건, 우리 군 건립의지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 전국 최초 화석전문박물관 건립으로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얼마전 유치가 확정된 어린이 체험관 등을 연계한 전국 최고 학생교육투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 최근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과 아울러, 지역의 장기적 미래비전 등을 고려하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마을 내 공동주차장의 부재로 주차공간이 부족함과 아울러,
- 한훤당 고택 방문객의 증가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인근 타 부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대상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사업, 생활 SOC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총 계		812,300	770,300	42,000
일 반 회 계		803,000	761,000	42,000
특 별 회 계		9,300	9,30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67	2,767	0
	의료급여기금	610	610	0
	기반시설	115	115	0
	치수사업	5,808	5,808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2,300	770,300	42,000	5.45
일반회계	계	803,000	761,000	42,000	5.52
	지방세수입	165,698	162,698	3,000	1.84
	세외수입	32,954	32,951	3	0.01
	경상적세외수입	24,297	24,29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8,657	8,654	3	0.03
	지방교부세	140,974	137,417	3,557	2.59
	조정교부금등	55,381	53,231	2,150	4.04
	보조금	277,576	276,280	1,296	0.47
	국고보조금등	194,902	194,406	496	0.26
	사·도비보조금등	82,674	81,874	800	0.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417	98,423	31,994	32.51
특별회계		9,300	9,300	0	0.0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2,300	770,300	42,000	5.45
일반회계	계	803,000	761,000	42,000	5.52
	일반공공행정	48,775	45,362	3,413	7.53
	공공질서및안전	13,073	13,043	30	0.23
	교육	11,059	11,011	48	0.44
	문화및관광	60,538	54,179	6,359	11.74
	환경보호	21,249	20,875	374	1.79
	사회복지	267,867	260,933	6,934	2.66
	보건	16,791	16,786	5	0.03
	농림해양수산	44,477	44,378	99	0.22
	산업·중소기업	2,871	2,461	410	16.65
	수송및교통	149,226	129,747	19,479	15.01
	국토및지역개발	56,935	51,363	5,572	10.85
	예비비	16,198	19,274	△3,075	△15.96
	기타	93,941	91,589	2,352	2.57
특별회계		9,300	9,300	0	0.0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2,300	770,300	42,000	5.45
일 반 회 계	계	803,000	761,000	42,000	5.52
	인건비	79,569	79,440	129	0.16
	물건비	45,104	42,341	2,763	6.52
	경상이전	357,239	355,938	1,301	0.37
	자본지출	294,217	255,564	38,653	15.12
	시설비및부대비	268,881	234,198	34,683	14.81
	민간자본이전	15,211	12,467	2,744	22.0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48	1,516	32	2.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52	738	14	1.97
	자산취득비	7,825	6,645	1,180	17.75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6,779	6,779	0	0.00
	예비비및기타	20,082	20,928	△846	△4.04
	예비비	16,198	19,274	△3,075	△15.96
	반환금기타	3,884	1,654	2,230	134.77
특 별 회 계		9,300	9,300	0	0.00

5. 주요 내용

□ 예산규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3억 원 보다 420억 원(증 5.45%)이 증가된 8,123억 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10억 원 보다 420억원이 증액된 8,0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30억 원,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등
시 조정교부금으로 21억 5천만 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포함한 12억 9천만 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 56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5억 원,
화원읍 청사 부지매입 9억 5천만 원,
주요시책 추진 홍보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7억 원,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다목적용 CCTV설치 2억 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8억 원,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12억 원,

국가산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등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 위해
가뭄대책관리, 소규모 하천 정비,
재난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1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총 50건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선, 농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에 따른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92억 7천 3백만 원 중에서
30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19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	요구액	비고
기획 예산실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등	1,194	2,553	1,359	
기획 예산실	달성소식지 발간	200	240	40	
법무 감사실	업무수행용 차량(합동평가 인센티브)	0	60	60	인센티브 광역보조6천
자치 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80	250	70	
회계과	청사 공기청정기 임대료	0	26	26	
회계과	회원읍 청사 부지 확장	0	950	950	
정보 통신과	상황실 영상 및 방송장비 교체	0	74	74	
정보 통신과	다목적용 CCTV설치	0	200	200	조정교부금 2억
일자리 경제과	고용안정사업관리운영(B2B/B2C 오픈마켓 전문셀러 전문인력 양성)	0	59	59	
일자리 경제과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0	367	367	국비공모 국고보조1억5천/ 광역보조6천
농업 정책과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0	36	36	시비 광역보조1천8백만
농업 정책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33	50	17	국시비
청소 위생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112	228	117	시비보조 광역보조5천8백만
공원 녹지과	국가산단조경지관리및국도5호선 가로변정비사업등	0	160	160	
공원 녹지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0	800	800	조정교부금 7억
공원 녹지과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0	1,200	1,200	조정교부금 10억
공원 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옥연지 송해공원 매점) 경상전출금	143	183	40	
공원 녹지과	옥연지 산림욕장 및 둘레길 사면정비	0	150	150	
공원 녹지과	산불진화차	51	153	102	
공원 녹지과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0	20	20	
복지 정책과	경로당 신축(가천리)	0	170	170	
희망 지원과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감리비 포함)	0	5,600	5,600	
교통과	택시· 시내버스부착 군정홍보 광고료	0	180	18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제2회 추경	요구액	비고
교통과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0	850	85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및 정비 등	900	1,300	400	
교통과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0	60	60	시비 광역보조2천5백만
교통과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0	650	650	
교통과	현풍 하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0	850	850	
건설과	화원 성산1리(마을회관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68	448	80	
건설과	화원 천내리(주원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4,200	4,700	500	
건설과	화원 본리리(인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600	2,700	1,100	
건설과	화원본리4리(46-10번지선외1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	100	400	300	
건설과	논공 삼리리(승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457	567	110	
건설과	다사 문산리 장수식당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50	2,050	1,000	
건설과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20	220	
건설과	가창 단산리(27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96	1,096	600	
건설과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100	1,000	900	
건설과	하빈 하산1리 천주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600	200	
건설과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60	80	2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500	250	
건설과	옥포 간경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	300	
건설과	옥포강림리(보금자리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0	100	100	
건설과	옥포 교항1리(13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	300	
건설과	옥포기세리(소로3류-옥14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100	450	35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9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150	100	
건설과	옥포 본리1리 96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800	800	
건설과	옥포 강림리(공단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	3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제2회 추경	요구액	비고
건설과	옥포본리리913번지선외1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	1,100	1,200	100	
건설과	옥포 김흥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옥포 본리1리 218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700	300	
건설과	옥포 본리1리 219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99	2,499	1,700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99	3,999	3,000	
건설과	옥포 본리리 240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100	1,230	130	
건설과	현풍 부1리(우성하이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550	150	
건설과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	300	
건설과	현풍 상1리(현풍향교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300	100	
건설과	현풍 하리 보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구지 가천리 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550	350	
건설과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	500	
건설과	구지 창리(47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500	300	
건설과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옥포 기세리 5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50	50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비	700	1,000	300	
건설과	다사 문산리 437번지 일원 도로확포장	0	200	200	
건설과	구지 예현리 301~310간(예현마을) 도로확장	0	150	150	
건설과	다사 문양리 748번지(장귀미) 도로확포장	0	100	100	
건설과	논공 노이리 436-2번지(갈실) 도로포장	0	100	100	
건설과	유가읍 용리 비슬산 진입도로 정비	0	40	40	
건설과	논공 노이리 599-8번지 일원 도로확장	0	300	300	
건설과	다사 서재~세천간 인도설치	0	30	30	
건설과	하빈 동곡1리 656-3번지 일원 도로정비	0	30	30	
건설과	화원 명곡~반송 간 도로측구 설치	0	100	100	
건설과	화원 구라로 도로변 측구정비	0	50	5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제2회 추경	요구액	비고
건설과	가창 삼산리 985-1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0	70	70	
안전 방재과	재난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0	20	20	
안전 방재과	소규모 하천 환경 정비 (환경정비 및 하상준설)	994	1,494	500	
안전 방재과	지방하천정비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779	3,779	1,000	
안전 방재과	구지도동리91번지선세천정비공사 (기존 도동리 563번지에서 변경)	199	300	100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하빈 기곡리 890번지 일원 농로포장)	100	200	100	
도시과	가창 찰빵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700	1,700	1,000	국비공모
도시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청춘 옥상실험실)	0	300	300	국비공모
도시과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집기비품 등 구입	0	163	163	
도시과	구지면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간판제작설치)	0	80	80	국비공모
도시 정비과	마을하수도 관리비	220	420	200	
도시 정비과	논공읍논공중앙로(공단입구~공단1교) 하수관거 정비공사	596	1,246	650	
도시 정비과	가창면 대일1리~삼산리 오수관거 설치공사	1,196	1,396	200	
도시 정비과	가뭄대책관리	0	150	150	
도시 정비과	하빈 하산2리(71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0	100	100	
도시 정비과	유가 쌍계2리(328번지선) 농로 확포장공사	0	150	150	
도시 정비과	옥포 벚꽃길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0	200	200	
건축과	빈집정비지원	30	60	30	
정책 사업과	달성군 종교인협의회 행사지원 및 송해공원 관광 기념품 제작	0	60	60	
정책 사업과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리 인부임	0	10	10	
정책 사업과	위원회 참석수당	5	14	9	
정책 사업과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	0	555	555	
정책 사업과	LH분양홍보관 임차료 및 관리비	0	52	52	
정책 사업과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통신료	0	20	2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제2회 추경	요구액	비고
정책 사업과	LH홍보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0	3	3	
문화 체육과	달천 예술창작공간 기자재 구입	0	70	70	
문화 체육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주변 천연잔디 식재	300	350	50	
문화 체육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상설야외공연장 대형차양천막 설치	0	100	100	
문화 체육과	달성문화재단 운영비(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음악회)	0	90	90	
문화 체육과	달성문화재단 운영비(문화기획 지원)	120	270	150	
문화 체육과	정구부 공용차량 교체	0	85	85	
문화 체육과	기타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	150	300	150	
문화 체육과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0	700	700	국비보조
문화 체육과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0	800	800	국비보조 기금보조2억4천
문화 체육과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물 수선공사	0	50	50	
문화 체육과	달성군민운동장 화장실 수선공사	0	50	50	
문화 체육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0	150	150	
문화 체육과	명곡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0	800	800	
관광과	사문진 비어 페스티벌 홍보비 등	30	60	30	
관광과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 경상전출금	969	1,207	238	사문진운영 각종재료비등
관광과	사문진역사공원 시설물관리	100	150	50	
관광과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주변정비 등	0	1,000	1,000	특별교부세 10억
관광과	유가사 명상수련원 건립 및 주변정비	0	1,100	1,100	특별교부세 7억
교육 청소년과	2019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0	30	30	교육부 공모
교육 청소년과	2019 달성 국제 청소년 캠퍼리 지원	0	135	135	
농촌 지도과	심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	0	32	32	

6.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3억 원 보다 420억 원(증 5.45%)이 증액된 8,123억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사업, 생활 SOC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편성입니다.
- 세입부문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추가재원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를 통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면에, 대내외적인 다양한 경제여건들의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경제에서의 경기변동을 예측하여 정확하게 재정판단을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연초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어야 합니다.

- 금번 추경과 관련한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 등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타당성 등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출일자 : 2019년 6월 12일

3. 제출이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제134조제1항(결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29조(예비비),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 여금
957,394	1,016,165	682,762	333,403	122,841	65,826	1,362	4,388	138,986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수납액 1조 161억 6천 5백만원 중 6천 827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3천 334억 3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천 228억 4천 1백만원, 사고이월이 658억 2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3억 6천 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 389억 8천 6백만원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946,851	1,022,057	1,005,601	1,045	15,411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천 468억 5천 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20억 5천 7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의 98.4%인 1조 56억 1백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이 10억 4천 5백만원,
미수납액이 154억 1천 1백만원임.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730,000	216,851	946,851	680,777	190,355	4,380	71,339

- 일반회계 예산액은 7천 300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천 168억 5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9천 468억 5천 1백만원임.
그 중 지출액은 6천 807억 7천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천 903억 5천 5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43억 8천만원을 제외한
713억 3천 9백만원이 집행잔액임.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10,543	10,565	10,564	0	1

-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5억 4천 3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은 105억 6천 5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105억 6천 4백만원을 수납하고 1백만원은 미수납됨.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 특별회계	9,735	10,543	1,986	0	4	8,553

-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5억 4천 3백만원임.
 그 중 지출액은 19억 8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백만원을 제외한
 85억 5천 3백만원이 집행잔액임.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계	539	190,355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 등 539건
일 반 회 계	명 시 이 월	346	123,167	
	사 고 이 월	191	65,826	
	계 속 비 이 월	2	1,362	
특 별 회 계	명 시 이 월	0	0	
	사 고 이 월	0	0	

- 명시이월 346건에 1천 231억 6천 7백만원,
 사고이월 191건에 658억 2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13억 6천 2백만원
 전체 539건에 1천 903억 5천 5백만원이 이월됨.

6.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 성 액
		조성액	사용액	
계	9,098	1,453	451	10,100
자활기금	854	47	60	842
식품진흥기금	190	66	93	163
재난관리기금	7,279	1,330	277	8,331
체육진흥기금	775	10	20	765

- 현재 4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0억 9천 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5천 3백만원을 조성하고,
 4억 5천 1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1억원임.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4,533	334	599	4,268
일반회계	4,412	284	569	4,127
특별회계	1	0	0	1
기 금	120	50	30	140

-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3천 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3천 4백만원이 발생하고
 5억 9천 9백만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42억 6천 8백만원임.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계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며
 현재액은 0원임.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1,816,299	127,385	906	1,942,778
행 정 재 산	1,801,635	126,756	890	1,927,501
일 반 재 산	14,664	629	16	15,277

-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8천 162억 9천 9백만원에서
1천 264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1조 9천 427억 7천 8백만원임.
증가내역은 달성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
다사 서재 출장소 주차장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임.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해당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837	8,050	188	1,865	84	549	941	9,366

- 전년도말 현재액 837건 80억 5천만원에서
188건, 18억 6천 5백만원 취득하고, 84건, 5억 4천 9백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941건에 93억 6천 6백만원임.
증가사유는 전기차 3대 등 차량 구입 및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등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8. 금고의 결산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천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016,164,682	682,762,270	333,402,412
일 반 회 계	1,005,600,779	680,776,672	324,824,107
기타특별회계	10,563,903	1,985,598	8,578,305

○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이 1조 161억 6천 468만 2천원이고
 세출은 6천 827억 6천 227만원으로
 잔액이 3천 334억 241만 2천원임.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065,202	-120,816	12,085,828	12,206,644	944,386

○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6천 520만 2천원이고
 120억 8천 582만 8천원이 증가하고
 122억 664만 4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4천 438만 6천원임.
 군 금고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의 금액과 일치함.

9. 분야별 총평

1)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분석

□ 세출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B/A	C/A	D/A
계	946,851,149	680,776,672	190,354,692	71,339,596	72%	20%	8%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326,000천원)포함

□ 전년도 대비 집행율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2017년		2018년		C/A	D/B	비고
	예산현액(A)	집행액(B)	예산현액(C)	집행액(D)			
계	865,488,416	587,020,258	946,851,149	680,776,672	109%	116%	

□ 검토의견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과 집행액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예산액은 9%, 집행액은 16% 증가하였으며,
- 집행율은 72%, 이월율은 20%, 불용율 8%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 보다는 높았지만 예산현액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과 이월예산 대부분이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 집중되어 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조사, 사업의 타당성 조사강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집행율 제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됨.

2)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2016년		증감(B-A)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명시이월	346	122,841	387	157,479	341	142,444	-41	-34,638
사고이월	191	65,826	185	58,633	122	35,308	6	7,193
계속비이월	2	1,362	2	739	0	0	2	623
계	539	190,029	574	216,851	463	177,752	-35	-26,822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금액이 각각 41건 및 346억 3천 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6건에 71억 9천 3백만원, 계속 비이월액 2건에 6억 2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유
교통과	창조문화바람 하이파이브현풍	5,961	2,658	1,433	공사기간 미도래
건설과	구지창리 665번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50	2,028	0	보상협의 지연
	다사문양 문양역 진입도로	2,491	2,444	0	공사기간 미도래
	비슬산휴양림도로 확포장	3,500	1,500	1,942	보상협의 지연
	가창최정산 도로공사	5,836	2,335	0	계약심사 중
안 전 방 재 과	다사서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	12,554	4,217	1,831	공사기간 미도래
	다사서재리일원 우수관로정비	3,000	1,300	1,700	공사기간 미도래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2,348	2,329	0	용역기간 미도래
	하빈강문리 매낙소하천정비	2,655	1,624	566	공사기간 미도래
건축과	낙경천 선비문화허브	2,456	2,076	230	선행절차 지연
정 책 사 업 과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교환	9,538	5,769	0	보상지연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28,279	7,068	16,327	공사기간 미도래

20억 원 이상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교통과 ‘창조문화바람-하이파 이브 현풍’, 건설과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등 4건, 안전방재과 ‘다사 서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4건, 건축과 ‘낙.경.청 선비문화허브사업’, 정책사업과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교환사업’, 보건과 ‘달성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등입니다.

□ 검토의견

- 예산이월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를 지연, 공사 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이해관계인 민원제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이월은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 이월 및 예산 낭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순세계잉여금 현황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세입 (나)	세출 (다)	결산상 잉여금 (라)=(나)-(다)	이월액 (마)	보조금 반납액 (바)	순세계 잉여금 (사)
2018	946,851,149	1,005,600,779	680,776,672	324,824,107	190,028,692	4,383,570	130,411,845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㉑=[㉒+㉓+㉔]-㉕	초과세입금 ㉒	자금없는 이월액㉓	집행잔액 ㉔	보조금반납금 ㉕
2018	130,411,845	58,749,630	326,000	75,719,785	4,383,570
2017	118,526,319	60,900,388		61,617,009	3,991,078
2016	126,168,220	44,429,986	1,220,000	86,144,593	5,626,359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매 회계연도 세수의 증가에 따른 초과세입금,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의 발생, 예산절감액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검토 의견

-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균형재정 실현에도 반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

□ 지출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2017	2018	비 고
총 계	계획액	1,059,125	1,069,340	1,613,337	
	지출액	145,699	135,680	437,267	
자활기금	계획액	100,000	102,000	70,000	
	지출액	60,000	42,000	60,000	
	비 율	60	41	86	
식품진흥기금	계획액	59,940	77,340	95,337	
	지출액	56,668	65,680	79,443	
	비 율	95	85	83	
재난관리기금	계획액	889,185	880,000	1,418,000	
	지출액	22,831	23,300	277,423	
	비 율	3	3	20	
체육진흥기금	계획액	10,000	10,000	30,000	
	지출액	6,200	4,700	20,400	
	비 율	62	47	68	

※ 재무활동(예치금 등) 제외

- 각종 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대비 지출액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그 특성상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관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출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연도별 지출액 간의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평소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0. 개선 및 권고사항

1) 예산편성시 사전검토 철저

□ 건설사업 예산 중 미발주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미발주 사유
건설과	화원 천내리(화장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01 시설비	894,330 (명시)	0	0		894,330	교도소 이전시 재검토
		401-03 시설부대비	5,670 (명시)	0	0		5,670	
건설과	화원 천내리 (한남미용정보 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01 시설비	1,494,600 (명시)	6,046			1,488,554	교도소 이전시 재검토
		401-03 시설부대비	5,400 (명시)				5,400	
안전방재과	논공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1-01 시설비	1,300,000 (명시)	0	0	0	1,300,000	사업취소
도시과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	2,441,000 (당해, 명시)	150,333	2,290,667	-	-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른 업무 협의 및 사업변경 지연에 따른
		401-02 감리비	15,000 (당해)	-	15,000	-	-	기본 및 실시계획 지연 ('18.12.7. 완료)
도시과	하빈PMZ 평화기념마을조성	201-03 행사운영비	50,000 (당해)	-	50,000	-	-	국제포럼 2회 유찰 및 해외연사 초청문제로 계약지연
		207-01 연구용역비	23,490 (당해, 명시)	-	23,490	-	-	용역기간 미도래
		401-01 시설비	1,785,096 (당해, 명시, 사고)	249,776	1,535,320	-	-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건립공사 12월 발주
		401-02 감리비	30,000 (당해)	-	30,000	-	-	공사기간 미도래

□ 검토의견

- 건설도시사업 중 2017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용역기간 미도래 등을 사유로 하여 대부분의 사업 모두 전액 명시·사고 이월하고, 화원 천내리(화장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구 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사전검토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관련부서 간 협조 등을 통해 신중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농로 확장·개설 사업장 선정 및 추진 철저

□ 보상추진 후 미추진 사업내역(2016~2018)

(단위: 천원)

회계연도	사 업 명	지출내역			미추진사유	비 고
		예산액	지출금액	불용액		
	합 계	803,372	394,427	408,945	미추진사유 (전체/협의완료/미협의)	
2016년	가창 행정2리(퇴계) 농로포장공사	70,471	40,749	29,722	보상 미협의 (8/6/2)	2017년 불용
"	가창 행정1리(76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70,000	68,071	1,929	보상 미협의 (16/10/6)	2016년 불용
"	가창 냉천2리(주유소옆) 농로포장공사	72,670	18,165	54,505	보상 미협의 (6/3/3)	2017년 불용
"	가창 정대2리(초곡마을) 농로개설공사	39,027	17,405	21,622	보상 미협의 (10/7/3)	2017년 불용
"	하빈 묘2리(까치실)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62,867	12,802	50,065	보상 미협의 (16/5/11)	2017년 불용
"	유가 한정1리 농로포장공사	56,210	-	56,210	보상 미협의 (26/13/13)	2018년 불용
"	유가 한정2리 농로확포장공사	39,464	5,479	33,985	보상 미협의 (25/19/6)	2018년 불용
"	유가 유곡1리 농로개설공사	64,506	-	64,506	보상 미협의 (11/8/3)	2017년 불용
"	유가 본말1리 중앙농로확포장공사	328,157	231,756	96,401	보상 미협의 (37/25/12)	2018년 불용

□ 검토의견

- 군에서 추진 중인 농로개설공사(농경지 진입용 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노선고시된 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로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이 원칙입니다.
- 사업 초기 예산 편성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전수 징구하고 설계 및 보상협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편입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3)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213-02)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a)	실수납액 (b)	차액 (a)-(b)	세입예산 (a)	실수납액 (b)	차액 (a)-(b)	세입예산 (a)	실수납액 (b)	차액 (a)-(b)
회계연도	2018			2017			2016		
총 계	2,951,835	4,190,402	-1,238,567	2,951,835	3,773,383	-821,548	2,652,335	3,060,123	-407,788
청소위생과	2,951,835	0	2,951,835	2,951,835	0	2,951,835	2,652,335	0	2,652,335
화 원 읍	0	863,152	-863,152	0	786,784	-786,784	0	719,115	-719,115
논 공 읍	0	399,352	-399,352	0	363,018	-363,018	0	326,344	-326,344
다 사 읍	0	1,324,729	-1,324,729	0	1,198,287	-1,198,287	0	1,007,012	-1,007,012
유 가 읍	0	410,070	-410,070	0	340,083	-340,083	0	162,613	-162,613
옥 포 읍	0	298,476	-298,476	0	292,635	-292,635	0	202,387	-202,387
현 풍 읍	0	477,742	-477,742	0	464,701	-464,701	0	369,218	-369,218
가 창 면	0	141,603	-141,603	0	112,698	-112,698	0	103,715	-103,715
하 빈 면	0	68,154	-68,154	0	54,154	-54,154	0	50,175	-50,175
구 지 면	0	207,124	-207,124	0	161,023	-161,023	0	119,544	-119,544

- 청소위생과 세입예산대비 각 읍면의 실제수납액의 차액을 비교하면 매년 약 4억원 정도의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는 곧 순세계잉여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매년 마다 인구 증가 등으로 따른 실제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의 세입예산을 편성해온 결과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연중예라도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과태료 수입의 예산 편성 및 징수 철저

□ 교통과 과태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예산대비	실제수납액	실 제 수납대비	미수납액	미수납율
2018	562,000	2,101,394	3.739	1,460,139	0.695	639,048	0.304
2017	558,400	2,123,902	3.804	1,297,885	0.611	826,017	0.389
2016	459,400	1,612,141	3.509	1,051,074	0.652	561,068	0.348

□ 검토의견

- 교통과의 과태료의 경우는 주정차위반 등 법규위반에 부과되는 경우로서 실제예측에 근거하여 예산현액을 세워야 하나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보면 350%~380%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비율도 30%~39%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전년도 실적 경험치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균형예산에 근접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더불어 징수결정된 부분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비율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성과지표 활용도 미흡

□ 성과지표 활용 미흡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명	2017		2018		B/A (%)	원인 분석	목표 수정	예산 반영
		목표	실적	목표 (A)	실적 (B)				
기획 예산실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비 확보율(%)	100	150	100	67	67	만족	부	부
법무 감사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제보건수	8,000	9,087	3,500	6514	186	만족	여	부
자치 행정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비 집행률(%)	90	90	95	83	87	만족	여	부
징수과	군세 체납 징수율(%)	38	65	38	63	165	만족	부	부
종합 민원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률(%)	49	64	49	58	118	만족	부	부
정보 통신과	정보화 교육 이수율(%)	100	96	100	95	95	미흡	부	여
일자리 경제과	상인 만족도 향상(%)	100	100	100	90	90	미흡	부	여
일자리 경제과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회)	86	112	86	95	110	만족	부	부
환경과	슬레이트처리신청 대비 지원율	44	59	100	141	146	만족	여	여
농업 정책과	쌀소득보전 직불제(농다소득증대)(ha)	2,100	2,028	2,200	1,990	90	만족	여	여
농업 정책과	유기동물보호사업(두)	720	757	280	934	299	미흡	여	여
청소 위생과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리)(%)	50	64	50	64	128	미흡	부	여
복지 정책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실적(개소)	38	28	188	21	11	만족	여	여
희망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률(%)	35	56	31	25.2	83	만족	여	여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액(백만원)	200	1,014	200	1,213	606	미흡	부	여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건수(건)	115	37	115	59	51	만족	부	부
도시과	공공하수도설치 사업진도율(%)	100	70	100	75	75	미흡	부	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율(%)	80	70.3	88	66.6	74	만족	부	부
정책 사업과	지역발전정책개발사업비 집행률(%)	80	76	80	63	79	미흡	부	여
보건과	금연클리닉 등록자 6개월 성공률(%)	42	51.6	33	19.6	59	미흡	여	부

□ 검토의견

-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가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목표지표를 가급적 사업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하여 업적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목표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 작성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적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전에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한 각 부서 사전 교육을 통해 적절한 목표설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성과보고서 작성부서에서는 보고서 제출 전에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군수 및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5.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군수의 책무
- 안 제6조~ 제7조에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달성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단체”란 학교폭력예방 또는 대책활동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공익 목적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달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철거나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그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군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과)장 또는 장학사, 대구달성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달성군 교육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협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협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
-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자문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깍연”을 “흡연”으로 개정(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

5. 참고자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에 “꺽연” 을 “흡연” 으로 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4. 음식물의 섭취와 꺾연”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으로 한다.

제80조 중 “4. 음식물의 섭취와 꺾연행위”를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u> 1.~ 3.(생략) 4. 음식물의 섭취와 <u>깍연</u> 5.~ 6.(생략)	<u>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u> 1.~ 3.(현행과 같음) 4. _____ 흡연 5.~ 6.(현행과 같음)
<u>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u> 1.~ 3.(생략) 4. 음식물의 섭취나 깍연행위 5.~ 8.(생략)	<u>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u> 1.~ 3.(현행과 같음) 4. _____ 흡연____ 5.~ 8.(현행과 같음)

참고

참 고 자 료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1	기납	既納	기납, 이미V냄
2	기도	企圖	기도, 꾀함
3	기립	起立	기립, 일어섬
4	기립하다	起立	일어서다
5	기만	欺瞞	속임, 기만
6	기망	欺罔	속임
7	기반	基盤	기반
8	기산하다	起算	~부터 계산하다, 기산(起算)하다
9	기상시간	起床時間	기상V 시간
10	기선	基線	기준선
11	기설	既設	이미 설정, 이미 만들
12	기성고	既成高	성과, 실적, [돈]일 때] 기성액
13	기성의	既成	기성, 기성의, 이루어진
14	기속	羈束	기속
15	기수의	既遂	기수(既遂)의
16	기승하다	騎乘	(말을) 타다
17	기아	棄兒	버려진 아이, 기아, 기아(棄兒)
18	기안	起案	기안
19	기어	gear	기어, 변속장치
20	기여하다	寄與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21	기에	技藝	기에
22	기왕	既往	이미, 벌써, 그전, 이전
23	기왕증	既往症	과거V 질병, 과거V 증세
24	기율	紀律	규율
25	기인	起因	원인, 까닭, 인하여, 기인
26	기일	期日	기일, 특정한 날이나 기간
27	기일	忌日	제삿날, 기일
28	기장	旗章	기장(旗章)
29	기장	記帳	장부V 기록
30	기장하다	記帳	(장부에) 적다, 써넣다, 기록하다, 기재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1	기재	記載	기재
32	기재하다	記載	쓰다, 적다, 적어V 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33	기점	起點	출발점, 시작점, 기점
34	기착	寄着	기착, 들름
35	기채	起債	공채(公債)V 모집, 기채(起債)
36	기채지	起債地	공채(公債)V 모집V 장소, 기채지(起債地)
37	기타	其他	그V 밖의, 그V 밖에
38	기타 필요한 사항	其他	그V 밖에 필요한 사항
39	기탁	寄託	기탁
40	기탁하다	寄託	기탁하다, 부탁하여 ~에 맡기다
41	기포	氣泡	기포, 거품
42	기피하다 (회피하다)	忌避	꺼리다, 피하다, 기피하다
43	기하다	企する	도모하다, 꾀하다, 일으키다,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44	기하다	基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45	기한	基	근거한, 기초한, 바탕으로 한
46	기한 내	期限内	기한까지
47	기항지	寄港地	기항지(寄港地)
48	기형	奇形	기형
49	기화로	奇貨	이용하여, 핑계로
50	기히	既	이미
51	긴급을 요할 때	緊急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 긴급한 경우
52	긴절히	緊切	절실히
53	깁연	喫煙	흡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군 복무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4.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영
 -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삭제
 - 안 제12조제2항 근거법령 수정
-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3조제13항)
-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제4항, 별표3)
- 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조항 개정(안 제23조제5항)
-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 개선(안 제23조제12항)
- 자녀 돌봄 휴가의 사용 범위 확대(안 제23조 제17항)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9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수정(별표4)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31. ~ 6. 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군 복무 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근거법령 수정

- 안 제23조제13항의 모성보호시간 확대
- 안 제23조제4항,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17항, 별표3을 수정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별표4를 수정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보완
- 안 제23조제19항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마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중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각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후단 중 “제20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2항 본문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한다.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7항 중 “상담에 참여할 경우”를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및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략)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u>을 따른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③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u>제18조</u>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 ④ (생략) ⑤ 공무상 <u>제18조</u>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④ (생략)	<u><삭제></u>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을 준용한다. <u><삭제></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u>조</u>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 ⑥ <u><삭제></u>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 제20조 ② ~ ③ (생략)	제21조(병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① ~ ⑩ (생략)	<삭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u>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u> <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u> <u>있다.</u>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u> <u>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u> <u>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u> <u>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u> <u>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u> <u>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 <u>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u> <u>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u> <u>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 <u>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u> <u>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u> <u>로 계산함</u> <u>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u> <u>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u> <u>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u> <u>(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u> <u>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u> <u>용한 것으로 봄)</u>

현행	개정안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18조</u>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⑪ (생략)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불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⑬ (생략) ⑭ ~ ⑯ (생략) 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할</u>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u>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u>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난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⑬ <u>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u> ⑭ ~ ⑯ (현행과 같음) 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u>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5(병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의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19. 9월 예정)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정수 및 반수의 증가
-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부분 개정(공동주택명칭, 지번)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1개리 12반 신설(313리 ⇨ 314리, 2,665반 ⇨ 2,677반)

읍 면	기 준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옥 포	교 향 2 리	4	교 향 2 리	4	1	12	
			교 향 7 리 (르 상 트 레 빌)	12			

- 이장 정수 : 증 1
 - 옥포읍 : 교향7리
-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부분 개정(옥포읍)
 - 공동주택명칭
 - 대성베르힐2차 ⇨ 대성베르힐6단지

- 지 번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18B 1,2L ⇨ 본리리 2649(삼환나우빌)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 본리리 2590(미진이지비아)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6.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6. ~ 6. 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옥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수를 증가시키고,
- 조례상의 공동주택명칭과 지번 중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도록 개정해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옥포지역에 아파트 1개리 12개 반을 신설하고, 옥포읍 교항6리의 공동주택명칭을 “대성베르힐 2차”에서 “대성베르힐 6단지”로 변경하고, 옥포읍 “본리4리 삼환나우빌”과 “본리5리 미진이지비아”의 가 지 번을 각각 “본리리 2649”, “본리리 2590”으로 표기하여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 또한, 신설된 1개리에 대해 제4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이장 정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7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7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읍 소계	9	26

【별표3】

리반의명칭및관할구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교항7리 <신설>	제1반	3008(르상트레빌) 701동 101호 ~ 1403호
		2	3008(르상트레빌) 701동 104호 ~ 1405호
		3	3008(르상트레빌) 702동 101호 ~ 1004호
		4	3008(르상트레빌) 703동 101호 ~ 1004호
		5	3008(르상트레빌) 704동 301호 ~ 1602호
		6	3008(르상트레빌) 704동 103호 ~ 1604호
		7	3008(르상트레빌) 705동 301호 ~ 1702호
		8	3008(르상트레빌) 705동 303호 ~ 1704호
		9	3008(르상트레빌) 706동 101호 ~ 1803호
		10	3008(르상트레빌) 706동 304호 ~ 1805호
		11	3008(르상트레빌) 707동 101호 ~ 1803호
		12	3008(르상트레빌) 707동 104호 ~ 1805호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교항6리	제 1 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1동 101호 ~ 804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2동 101호 ~ 1402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2동 103호 ~ 1404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3동 201호 ~ 16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4동 101호 ~ 1502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4동 103호 ~ 1704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5동 101호 ~ 1802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5동 203호 ~ 1704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201호 ~ 1802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103호 ~ 1804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7동 101호 ~ 1802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7동 103호 ~ 1804호
	본리4리	제 1 반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2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3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4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5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6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7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8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본리5리	제 1 반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5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6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11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4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6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6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리	7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7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읍 소계	9	25	25	옥포읍 소계	9	26	26

【별표3】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읍	〈신설〉			옥포읍	교항7리	제1반	3008(르상트레빌) 701동 101호 ~ 1403호
						2	3008(르상트레빌) 701동 104호 ~ 1405호
						3	3008(르상트레빌) 702동 101호 ~ 1004호
						4	3008(르상트레빌) 703동 101호 ~ 1004호
						5	3008(르상트레빌) 704동 301호 ~ 1602호
						6	3008(르상트레빌) 704동 103호 ~ 1604호
						7	3008(르상트레빌) 705동 301호 ~ 1702호
						8	3008(르상트레빌) 705동 303호 ~ 1704호
						9	3008(르상트레빌) 706동 101호 ~ 1803호
						10	3008(르상트레빌) 706동 304호 ~ 1805호
						11	3008(르상트레빌) 707동 101호 ~ 1803호
						12	3008(르상트레빌) 707동 104호 ~ 1805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읍	교항6리	제1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1동 101호 ~ 804호	옥포읍	교항6리	제1반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1동 101호 ~ 804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1호 ~ 1402호			2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2동 101호 ~ 1402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2동 103호 ~ 1404호			3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2동 103호 ~ 1404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3동 201호 ~ 1602호			4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3동 201호 ~ 16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1호 ~ 1502호			5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4동 101호 ~ 1502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4동 103호 ~ 1704호			6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4동 103호 ~ 1704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101호 ~ 1802호			7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5동 101호 ~ 1802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5동 203호 ~ 1704호			8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5동 203호 ~ 1704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201호 ~ 1802호			9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201호 ~ 1802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6동 103호 ~ 1804호			10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6동 103호 ~ 1804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1호 ~ 1802호			11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7동 101호 ~ 1802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 607동 103호 ~ 1804호			12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 607동 103호 ~ 1804호
	본리4리	제1반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본리4리	제1반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201~1902
		2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2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1동 103~1905
		3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3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201~1902
		4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4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2동 103~1905
		5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5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201~2702
		6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6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3동 103~2705
		7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7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4동 201~2502
		8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 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8	2649(삼환나우빌아파트) 105동 201~2402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본리5리	제1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옥포읍	본리5리	제1반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2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3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4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5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6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7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8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9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304			10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304
		11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1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2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3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4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5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6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7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8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19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304			20	2590(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304

참고 1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 옥포읍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관계 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7.1.시행)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4.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안제14조 제4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26조 제4항 제3호)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2019. 5. 27.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관계 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4조 제4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
- 안 제26조 제4항 제3호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제26조 제4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제26조(연회비) ① ~ ③ (생 략) ④ 1. ~ 2.(생 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제26조(연회비) ① ~ ③ (생 략) ④ 1. ~ 2.(생 략)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참고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7.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7.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 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 보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4조제1항)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4. ~ 6. 3.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규정됨에 따라
-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의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28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u> <u>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u> <u>으로 한다.</u>	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 제2조 -----. <삭제>

참고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19. 7. 16.>

※ 참고(개정 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의료급여법」을 적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근거 범위 정비(안 제1조)
-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안 제2조)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변경(안 제2조)

5.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료급여법」 제3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8. ~ 5. 28.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의 지원 대상의 근거 범위 정비
- 안 제2조에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
- 안 제2조에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을 삭제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으로 하고, “10,000원 미만” 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삭제>-----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에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1조~제2조)
-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용역(안 제3조~제4조)
-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안 제7조~제13조)
- 유치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안 제14조~제16조)
- 예산확보 및 지원, 수당 지급 규정(안 제17조~제18조)

5. 기타사항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6. 3.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
- 안 제3조~제4조에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용역
- 안 제5조~제6조에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 안 제7조~제13조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
- 안 제14조~제16조에 유치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
- 안 제17조~제18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 수당 지급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후보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평가대상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한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4.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제3조(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의 수립)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규모 제안
3. 건립 비용 추정

4.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신청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

제5조(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유치 전·중·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4.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향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6.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예정지 확정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과 연계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유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유치위원회에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들의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둔다.

②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내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전문연구단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홍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유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후보지 선정, 유치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7월 시행)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을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으로 변경(안 제14조 제1항 제5호)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24. ~ 6. 3.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료의 감면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로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을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4.(생략) 5.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대상·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100분의 50</u> 6.~ 8.(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4.(현행과 같음) 5. ----- · <u>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50</u> 6.~ 8.(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7월 시행)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

4. 주요내용

-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28.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u>)	제5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u>)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을 개정된 기준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안 제3조)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5. ~ 6. 4.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으로 변경하고,
- “장애등급 4급, 5급,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u>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한한다.)</u> 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 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 3. 장애등급 6급 : 10만원 4. 위 각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u>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u>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